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1999. 11 . 19 평창군수(종합민원실장)
- 나. 회부일자 : 1999. 12. 20
- 다. 상정일자 : 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조례특위('99.12.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종합민원실장 김일래)

가. 제 안 이 유

-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및 결과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현행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함.

나. 주 요 내 용

- 평창군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허해성)

- 본 조례안은 호적법 제131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읍면장이

동법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호적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근거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기 및 결과,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여 규정된 상한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부과하게 되었던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이 해태기간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세부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명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호적신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끝 .